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의견서

2021. 11.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경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및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언론보도(이하 ‘기사’라 함)에 대해 삭제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안 제17조의3)

2. 언론중재법의 근본적 입법목적 및 다른 조치들과의 부조화

- 언론중재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체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나 다른 주장, 형사절차의 결과 등 기사 내용에 ‘이력’을 추가함으로써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독자들의 알 권리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안 제2조 제22호와 안 제17조의3에 따르면, 개정안상의 ‘검색배제’란 인터넷뉴스서비스상의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 즉, 정보통신망상에서 기사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함. 이는 위 정정보도 등의 조치와

는 달리 일방 당사자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정보도나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 다시 검색배제를 청구하여 기사 전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는 검색배제의 전 절차로만 기능하게 되어, 위와 같은 조치들의 의미, 즉,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나 형사절차의 결과 등 기사 내용에 ‘이력’을 추가함으로써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독자들의 알 권리도 균형적으로 보장한다는 제도의 의미가 몰각될 것으로 보임.

3.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 침해 우려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음.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기사 삭제, 차단과 같은 조치는 기존의 정정보도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함.
-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검색배제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매개자로서는 기사 삭제 등의 검색배제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음.

- 한 표현물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혹은 미묘한 법적 해석의 차이로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잠정적 합의·결정에 기한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 공인 및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 제기의 역사 자체가 지워지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음.
- 또한 개정안은 보도 내용의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가 되거나 손해배상이 인정된 기사도 기사 '전체'에 대한 삭제, 차단, 접근제한 등의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의 문제로 기사 내의 다른 모든 표현 내용까지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함. 정정보도, 추후보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이기에 용인될 수 있었으나, 기사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삭제, 차단을 의욕하는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기사 '전체'에 대한 제한을 예정하는 것이기에 과잉한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 추후보도는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보도로, 원 보도 내용의 '허위성'이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삭제 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특정인이 어떠한 혐의로 형사 수사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면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해당 사건이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사실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거의 진실한 정보를 삭제, 차단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듯, 현재도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성 보도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한 보도라면 사법부를 통해

기사삭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개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기사 전체를 삭제하여 일방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4. 결론

-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 입법목적 및 다른 조치들과 부조화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